



포 천 통 신

애국하는 어린이
자주적인 어린이
창의적인 어린이
건강한 어린이

487-803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40 ☎ 교무실:534-0531, 534-3963 행정실:535-6834 FAX:534-3964

-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-

안녕하십니까? 희망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바른 교육환경이 형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불법찬조금이란?
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·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⇒ **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**

●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

구분	학 교 발 전 기 금	불 법 찬 조 금
구성명의	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	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
구성방법	●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·조성 ● 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●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	●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(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) ●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
사용목적	●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●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●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●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	●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- 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 - 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회환등

□ 본교는 불법찬조금을 절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- 포천초등학교 : pocheon.es.kr → 학교재정공개 → 불법찬조금 신고(535-6834)
-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: www.kenpc.go.kr → 전자민원창구 → 사이버상담 및 신고 → 불법찬조금
- 전 화 :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)539-0042~0044
-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열린광장 → 부조리신고 → 불법찬조금 신고
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57~0859

2016. 4. 04.

포 천 초 등 학 교 장 (관인생략)